



구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람	기관의 장

수 영 구 보

호외 제763호 2024. 5. 20.(월)

조 례

○부산광역시 수영구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1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12
○부산광역시 수영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20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25
○부산광역시 수영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30
○부산광역시 수영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44
○부산광역시 수영구 향토문화유산 보호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53
○부산광역시 수영구 해양레포츠 기반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71
○부산광역시 수영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75
○부산광역시 수영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80
○부산광역시 수영구 어린이 안전보험 운영 조례-----	84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88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92
○부산광역시 수영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97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101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105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109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113

규 칙

○부산광역시 수영구 법제업무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117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무인계인수 규칙 일부개정규칙-----121

회 람								
--------	--	--	--	--	--	--	--	--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수영구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4년 5월 20일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강 성 태

부산광역시 수영구 조례 제1270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산광역시 수영구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관리하는데”를 “관리하는 데”로 한다.

제2조 중 “이라 함은”을 “이란”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구 상징물”을 “상징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구상징물”을 “제1항에 따라 상징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상징물을 사용하는 때에는 「부산광역시 수영구 이미지
통합 디자인 매뉴얼」”을 “상징물은 각각의 표준규정집”으로 한다.

제6조제1항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상징물 사용 승인신청서를 제출
하고 그”를 “별지 제1호서식의 상징물 사용승인 신청서를 제출하고”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을 “제1항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으로,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을 “구청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로, “그 승인”을 “승인”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5조
제2항의 규정”을 “제5조제2항”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제1항에 의한 사용료”를 “사용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9조 중 “제7조 규정에 의한”을 “제7조에 따라”로, “구 상징물”을 “상징물”로,

“관계법규의 규정”을 “관계법규”로 한다.

별표 1 중 제목 “수영구기”를 “수영구기 (제3조제1호 관련)”으로 하고, 별표 2 중 제목 “심볼마크”를 “심볼마크 (제3조제2호 관련)”으로 하며, 별표 3 중 제목 “브랜드 슬로건”을 “브랜드 슬로건 (제3조제3호 관련)”으로 하고, 별표 4 및 별표 5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제목 “구 상징물 사용승인 신청서”를 “상징물 사용승인 신청서”로 하고, “수영구 상징물 관리 조례 제7조에 의거”를 “부산광역시 수영구 상징물 관리 조례 제7조에 따라”로 하며, 별지 제2호서식 중 제목 “구 상징물 사용변경 신청서”를 “상징물 사용변경 신청서”로 하고, 신청인란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하며, “수영구 상징물 관리 조례 제7조에 의거”를 “부산광역시 수영구 상징물 관리 조례 제7에 따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4]

캐릭터 (제3조제4호 관련)

1. 기본형 및 로고타입

2D	3D	로고타입(국문·영문)	
			
			

2. 의 미

어느 해 광안리 밤바다를 수놓은 불꽃에서 하나 둘 떨어져 나온 불씨들이 광안리해변에 내려앉으며 모래에서 태어난 ‘모리’, 수많은 모래알이 갖가지의 추억을 담고 있듯 늘 우리 곁에서 묵묵히 동고동락한 모래의 친근한 이미지와 함께 수영구에 위치한 랜드마크인 광안대교를 형상화하였다. 모리의 단짝 친구 아기 문어 ‘무니’도 늘 함께한다.

3. 색상규정

전용색상의 효과적인 사용을 위하여 인쇄방법, 잉크의 농도, 종이의 재질 등을 검토하여 규정집이 정한 표준색상을 유지하여야 하며 특수한 재질을 사용한 색상 표현에 있어서는 반드시 표준색상 체계를 따라야 한다.

기본색상		사용패턴	
 C 65 M 36 Y 0 K 0	 C 8 M 66 Y 76 K 0	 캐릭터 가로 200px이하의 패턴 생략가능	
 C 85 M 59 Y 0 K 0	 C 0 M 70 Y 63 K 0		
 C 2 M 22 Y 46 K 1	 C 47 M 54 Y 65 K 54		
 C 12 M 49 Y 53 K 2	 C 0 M 0 Y 0 K 100		
 C 0 M 49 Y 51 K 0			

[별표 5]

구목·구화·구조 (제3조제5호 관련)

<p>◇ 구 목 : 곶 솔</p> <p>◇ 과 명 : 소나무과</p> <p>◇ 학 명 : <i>Pinus thunbergii</i> Parl.</p> <p>◇ 분포지 : 한국, 일본, 중국</p> <p>소나무과에 속하는 상록교목, 키는 30m 이상이며 꺾질은 어두운 갈색을 띤다. 잎은 진한 녹색으로 2개씩 달리며 꽃은 5월에 핀다.(수영사적공원의 곶솔은 천연기념물로 수령은 400년 가량임)</p>	
<p>◇ 구 화 : 함박꽃</p> <p>◇ 과 명 : 작약과</p> <p>◇ 학 명 : <i>Paeonia lactiflora</i> Pall.</p> <p>◇ 분포지 : 동부아시아</p> <p>뿌리는 굵은덩이 모양이고 잎은 달걀꼴로 가장자리 끝이 뾰족하다. 4월에 새싹이 나고 꽃은 5~6월에 피는데 빛깔은 흰색, 분홍색, 적색, 황색 등을 띤다. 꽃이 아름다워 원예용으로 키우고 뿌리는 한방 약재로 쓰인다.</p>	
<p>◇ 구 조 : 동박새</p> <p>◇ 과 명 : 동박새과</p> <p>◇ 학 명 : <i>Zosterops japonicus</i> Temminck&Schlegel, 1845</p> <p>◇ 분포지 : 한국, 일본</p> <p>몸길이는 11cm 정도의 명금(鳴禽)으로 등은 녹색이고 날개와 꼬리는 녹갈색이며 배는 흰색, 옆구리는 황갈색이다. 눈 주위가 흰색으로 돋보인다. 잡목의 아랫가지에 감겨있는 칩덩굴 등에 집짓기를 하며 곤충류·진드기류 등이 주식이지만 동백꽃 꿀을 특히 좋아한다. 5~6월경에 4~5개의 알을 낳아 암수가 함께 품고 기른다. 금련산, 백산, 배산 등에 고루 분포하는 텃새이다.</p>	

신 · 구조문대비표

현	개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수영구를 상징하는 상징물을 규정하고, 이를 <u>관리하는데</u>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 ----- <u>관리하는 데</u> ----- ----- -----.</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상징물”이라 함은 부산광역시 수영구(이하 “구”라 한다)를 상징하는 구기, 심볼마크, 브랜드 슬로건, 캐릭터, 구목, 구화, 구조를 말한다.</p>	<p>제2조(정의) ----- -----<u>이란</u> ----- ----- ----- ----- -----.</p>
<p>제4조(상징물의 변경 등) ①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u>구 상징물</u>을 제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청회 등 여론 수렴 절차를 거쳐야 한다.</p> <p>② <u>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구상징물</u>을 제정하거나 변경하였을 경우 관계법규에 따라 업무표장등록을 하여야 한다.</p>	<p>제4조(상징물의 변경 등) ① ----- ----- ----- <u>상징물</u>----- ----- -----.</p> <p>② <u>제1항에 따라 상징물</u>----- ----- ----- -----.</p>
<p>제5조(상징물 관리 등) ① (생략)</p> <p>② 제3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p>	<p>제5조(상징물 관리 등) ① (현행과 같음)</p> <p>② -----</p>

의 상징물을 사용하는 때에는 「부산광역시 수영구 이미지 통합 디자인 매뉴얼」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제6조(상징물의 관련사업 등) ① 구청장은 상징물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 3. (생략)
4.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생략)

제7조(상징물의 사용승인) ① 제3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상징물을 활용하여 물품을 제작하거나 행사 등에 이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구청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상징물 사용 승인신청서를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상징물 사용변경 승인신청서를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

-- 상징물은 각각의 표준규정집-----

-----.

제6조(상징물의 관련사업 등) ① -----

-----.

1. ~ 3.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

② (현행과 같음)

제7조(상징물의 사용승인) ① ----

----- 별지 제1호서식의 상징물 사용승인 신청서를 제출하고 -----

-----.

② ----- 제1항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
----- 구청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
----- 승인-----

야 한다.

③ 상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상징물을 승인된 목적에 맞도록 사용하여야 하며, 승인된 목적에 위배된 때에는 구청장이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제8조(사용료) ① (생략)

② 제1항에 의한 사용료, 납부 시기, 납부방법 등은 상호협약으로 정한다.

③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 1. ~ 3. (생략)
- 4.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위반시 조치사항) 구청장은 제7조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구 상징물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상표법」 등 관계법규의 규정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별표 1]

수영구기

정 기	약 기
(생략)	(생략)

(사용 및 제작요령)
○ (생략)

-----.

③ -----

--- 제5조제2항-----

-----.

제8조(사용료) ① (현행과 같음)

② 사용료-----

-----.

③ -----

-----.

1. ~ 3.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

제9조(위반시 조치사항) -----

제7조에 따라 -----

----- 상징물-----

-- 관계법규-----

-----.

[별표 1]

수영구기 (제3조제1호 관련)

-----	-----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
○ (현행과 같음)

- (생략)
- (생략)
- (생략)

[별표 2]

심볼마크

1. 기본형 및 작도형

기본형	작도형
(생략)	(생략)

- 2. 의 미
(생략)
- 3. 색상규정
(생략)

[별표 3]

브랜드 슬로건

1. 기본형 및 작도형

기본형	작도형
(생략)	(생략)

- 2. 의 미
(생략)
- 3. 전용색상
(생략)

[별지 제1호서식]

구 상징물 사용승인 신청서		
신청인	사용주체 (기관·기업·단체명)	
	대표자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사용상징물		
사용기간		
사용목적		
사업내용 (구체적으로)		
수영구 상징물 관리 조례 제7조에 의거 수영구 상징물 사용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귀하		
【첨부자료】		
○ 개인 : 사용계획서, 사업자등록증(해당되는 경우) 사본 각 1부		
○ 법인 : 사용계획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별표 2]

심볼마크 (제3조제2호 관련)

1. -----

-----	-----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 2. -----
(현행과 같음)
- 3. -----
(현행과 같음)

[별표 3]

브랜드 슬로건 (제3조제3호 관련)

1. -----

-----	-----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 2. -----
(현행과 같음)
- 3. -----
(현행과 같음)

[별지 제1호서식]

상징물 사용승인 신청서		
-	(-----)	

	(-----)	

부산광역시 수영구 상징물 관리 조례 제7조에 따라 -----		

【-----】		
○ -----		
○ -----		

[별지 제2호서식]

구 상징물 사용변경 신청서		
신청인	사 용 주 체 (기관기업단체명)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소 재 지	
	전 화 번 호	
사 용 상 징 물		
사 용 기 간		
사 용 목 적		
변경내용 및 사유 (구체적으로)		
<p>수영구 상징물 관리 조례 제7조에 의거 수영구 상징물 사용변경을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신 청 인 : (인)</p> <p>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귀하</p>		

[별지 제2호서식]

상징물 사용변경 신청서		
-	----- (-----)	

	생년월일 (-----)	

<p>부산광역시 수영구 상징물 관리 조례 제7조에 따라 -----</p> <p>-----.</p> <p style="text-align: center;">-----</p> <p style="text-align: right;">-----</p> <p>-----</p>		

◆ 제안이유

부산광역시 수영구 상징 캐릭터를 변화·성장하고 있는 현재 수영구의 정체성을 보다 명확하게 드러낼 수 있는 캐릭터로 변경하여 대표성 및 상징성을 강화하고 구목·구화·구조의 학명 등을 국가생물종목록에 따라 정비하여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함임.

◆ 주요내용

- 가. 구 상징 캐릭터 변경 (별표 4)
- 나. 구목·구화·구조의 학명 등 정비 (별표 5)
- 다. 상징물 사용 기준 정비 (제5조)
- 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 (제1조, 제2조, 제4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별표 1, 별표 2, 별표 3,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4년 5월 20일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강 성 태

부산광역시 수영구 조례 제1271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수립 등) ①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른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이하 “기본전략”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② 법 제8조제4항 단서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 1.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지표 중 개별지표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
- 2. 법령 및 조례의 제정·개정·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려는 경우
- 3. 착오, 오기,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정정하려는 경우
- 4. 그 밖에 기본전략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③ 구청장은 기본전략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부산광역시 수영구(이하 “구”라 한다) 공보 및 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전략의 수립 방법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3조(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 수립·변경) ① 구청장은 법 제9조제4항 본문에 따라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이하 “추진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제9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법 제9조제4항 단서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 1. 법령 및 조례의 제정·개정·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려는 경우
- 2. 착오, 오기,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정정하려는 경우
- 3. 그 밖에 추진계획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추진계획 심의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제4조(추진상황의 점검) ① 위원회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추진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경우 서면조사, 현장조사 또는 온라인조사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추진계획 추진상황의 효율적 점검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 기관·단체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추진계획 추진상황의 점검을 마친 경우 그 점검 결과를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5조(조례 제·개정에 따른 통보 등) ① 구청장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조례를 제정·개정하려는 때에는 입법예고 이전에 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기본전략과 관련이 있는 중·장기 행정계획을 수립·변경하려는 때에는 그 행정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기 전에 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 통보해야 하는 조례의 대상이나 중·장기 행정계획의 범위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④ 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조례나 중·장기 행정계획을 통보받은 경우 이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검토 결과를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법 제14조제7항에 따라 위원회의 검토 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조례의 제정·개정 또는 중·장기 행정계획의 수립·변경에 그 검토 내용을 적절하게 반영하고,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지속가능발전지표의 개발·보급) ① 구청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속가능발전지표를 개발하고 보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속가능발전지표의 효율적 보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구 공보 및 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이를 게재할 수 있다.

제7조(지속가능성 평가) ① 위원회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지속가능성 평가를 하는 경우 지속가능발전지표의 달성 정도와 투입된 행정비용 대비 산출된 행정효과의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② 위원회는 지속가능성 평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부서 등에 자료 또는 의견을 요청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평가전문 기관에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지속가능성 평가를 마친 경우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제8조(지속가능발전 보고서)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
- 2. 지속가능성 평가 결과
- 3. 구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향후 과제 및 정책 방향
- 4. 그 밖에 구의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보고서의 효율적 작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부서에 자료·의견을 요청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 기관·단체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보고서의 공표 시 구 공보 및 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의 방법을 활용한다.

제9조(위원회의 설치) 구의 지속가능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으로 법 제20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는 위원회를 둔다.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한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구 소속 국·소장, 기획전략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시민사회단체, 학계, 산업계 등에서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지속가능발전업무 담당계장이 된다.

제11조(위원의 임기)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그 밖에 위원의 해촉, 제척·기피·회피 사유,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수영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조사·연구의 의뢰) 구청장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수립·변경, 지속가능발전지표 개발 등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련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단체 등에 자문하거나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안이유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수영구의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는 데 기여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제1조)

나. 기본전략, 추진계획 및 추진상황 점검 (제2조~제4조)

다. 조례 제개정 통보 등, 지표의 개발보급, 평가, 보고서 (제5조~제8조)

라.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 구성 및 운영 등 (제9조~제14조)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수영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4년 5월 20일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강 성 태

부산광역시 수영구 조례 제1272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산광역시 수영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을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사업내역서

① 정책사업명			
② 추진배경			
③ 사업개요			
④ 사업부서		⑤ 담당자	
⑥ 선정기준		⑦ 사업기간	
<그간 주요 추진내용>			
○ 내용 ※ 관련 결재문서가 있는 경우 문서 명칭 기재	'00.00.00	○○○ 구청장	
		○○○ 국장	
		○○○ 과장	
		○○○ 계장	
		○○○ 주무관	
○ 내용	'00.00.00	○○○ 국장	
		○○○ 과장	
		○○○ 계장	
		○○○ 주무관	

<기재항목>

- ① 정책사업명 : 온-나라시스템 상의 단위과제 카드명과 정책사업명 일치 권고
- ② 추진배경 : 정책의 추진계기 등 발단에 대해 상세하게 적시
- ③ 사업개요 : 사업목적, 추진내용 등 사업 전반에 대해 개괄적 기술
- ④ 사업부서 : 소속 기관명, 부서명(과 단위) 기재
- ⑤ 담당자 : 現 사업 담당자 및 사업부서장을 직급(직위)과 함께 기재
- ⑥ 선정기준 : 국정과제(국정현안) / 국민신청 / 대규모예산 / 연구용역 / 법령 등 개폐 / 기타 中 택 1
- ⑦ 사업기간 : 사업의 시작 및 (예상)종료 시점 기재
- ※ <그간 주요 추진내용> :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선정되기 이전 진행되어 온 주요 추진사항 및 기타 주요내용 등을 기재
- ※ 일시 및 관련자 : 최종결재 날짜 기준으로 내림차순, 결재라인 직급순으로 실명 기재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u>」에 따라 부산광역시 수영구의 주요 정책의 결정과 집행 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실명 등 관련 사항을 기록·관리하고 공개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여 구정에 대한 신뢰를 증진하고 구정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u>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u>」 ----- ----- ----- ----- ----- ----- -----.</p>

◆ 제안이유

상위법령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의 일부개정^{2023. 6. 27. 공포시행}에 따른 제명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행정안전부 「2023년 정책실명제 운영 지침」에 따른 서식과 일치하도록 별지 제1호서식을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인용 제명 정비 (제1조)
- 나. 별지 서식 정비 (별지 제1호서식)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4년 5월 20일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강 성 태

부산광역시 수영구 조례 제1273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관계공무원과 해당 사무 전문가”를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2분의 1 이상으로”를 “2분의 1을 초과하여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 임명위원 : 구청장이 임명하는 5급 이상의 공무원
- 2. 위촉위원

가.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공인노무사, 민간위탁 관련 분야 전문가

나. 구의회 의원

제9조제2항 본문 중 “15일 이내”를 “10일 이내”로 한다.

제20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을 “제1항”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민간위탁된 사무는 이 조례에 따라 위탁된 것으로 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p>제8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② (생략)</p> <p>③ 위원은 <u>관계공무원과 해당 사무 전문가</u>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전체위원 수의 <u>2분의 1 이상으로</u> 한다.</p> <p><신설></p> <p><신설></p> <p>④ ~ ⑦ (생략)</p>	<p>제8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 <u>다음 각 호의 사람</u> ----- ----- ----- ----- ----- ----- <u>2분의 1을 초과하여야</u> -----.</p> <p>1. <u>임명위원 : 구청장이 임명하는 5급 이상의 공무원</u></p> <p>2. <u>위촉위원</u> 가. <u>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공인노무사, 민간위탁 관련 분야 전문가</u> 나. <u>구의회 의원</u></p> <p>④ ~ ⑦ (현행과 같음)</p>
<p>제9조(수탁기관 선정에 대한 이의신청) ① (생략)</p> <p>② 구청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u>15일 이내</u>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1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p>	<p>제9조(수탁기관 선정에 대한 이의신청)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u>10일 이내</u>----- ----- ----- ----- -----</p>

<p>통지하여야 한다.</p> <p>제20조(처리상황의 감사) ① (생략)</p> <p>② 구청장은 <u>제1항의 규정</u>에 따른 감사결과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p> <p>③ (생략)</p>	<p>-----.</p> <p>제20조(처리상황의 감사) ① (현행과 같음)</p> <p>② ----- <u>제1항</u>-----</p> <p>-----</p> <p>-----</p> <p>-----</p> <p>-----.</p> <p>③ (현행과 같음)</p>
---	--

◆ 제안이유

중소기업 소상공인 체감형 규제혁신(민간위탁 분야) 개선안^[음부즈만지원단-2152(2023. 9. 8.)회]에 따라 민간위탁 사무의 투명성·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민간위탁 사무의 관리·운영 및 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명확한 법적기준을 마련함.

◆ 주요내용

- 가. 심의위원회 민간위원의 구성 확대 및 자격요건 명확화 (제8조)
- 나. 수탁기관 선정에 대한 이의신청 결과 통지기한 단축 (제9조)
- 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 (제20조)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수영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4년 5월 20일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강 성 태

부산광역시 수영구 조례 제1274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제38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수영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충민원”이란 부산광역시 수영구(이하 “구”라 한다) 및 소속기관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한다) 및 불합리한 행정체도로 구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구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을 말한다.
2. “신청인”이란 이 조례에 따라 부산광역시 수영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한 개인·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시민사회단체”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제3조(위원회 설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부산광역시 수영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독립성을

보장한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구 및 소속기관에 관한 고충민원의 조사·처리
2. 고충민원과 관련된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
3. 고충민원의 처리과정에서 관련 행정제도 및 그 제도의 운영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에 대한 권고 또는 의견표명
4. 위원회가 처리한 고충민원의 결과 및 행정제도의 개선에 관한 실태 조사와 평가
5. 민원사항에 관한 안내, 상담 및 민원처리 지원
6.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한 교육 및 홍보
7.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된 국제기구 또는 외국의 권익구제기관 등과의 교류 및 협력
8.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된 개인·법인 또는 단체와의 협력 및 지원
9.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위원회에 위탁된 사항

제5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거쳐 위촉한다.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 3. 4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 4. 건축사·세무사·공인회계사·기술사·변리사의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직종에서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 5.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 ② 위원장은 위원들이 호선으로 선출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② 임기가 만료되거나 임기 중 결원된 경우 임기만료 또는 결원된 날 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위촉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후임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새로이 개시된다.

제7조(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 2.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3. 정당의 당원
- 4.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사람
-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해촉 된다.

제8조(겸직금지) 위원은 재직 중 다음 각 호의 직을 겸할 수 없다.

1.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

2.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행정기관등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서 정하는 특별한 이해 관계가 있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

제9조(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 1. 위원이 당해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 의무자인 경우
- 2. 위원이 당해 사안의 당사자와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 3. 위원이 당해 사안에 관하여 증언, 감정, 법률자문 또는 손해사정을 한 경우
- 4. 위원이 되기 전에 당해 사안에 대하여 감사, 수사 또는 조사에 관여한 경우
- 5. 위원이 당해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 하였던 경우

②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10조(회의)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2호의

사항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1. 시정 권고, 제도개선 권고, 감사 의뢰의 결정에 관한 사항
- 2. 종전 의결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사항
- 3.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서 처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9조에 따라 제척·기피·회피한 위원의 경우 제1항의 재적위원 수 계산 시 제외한다.

제11조(비밀유지 의무) 위원회 위원으로 있거나 있었던 사람은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12조(고충민원의 신청) ① 누구든지(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 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 1. 신청인의 성명과 주소(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
- 2. 신청의 취지 및 이유와 고충민원의 원인이 된 사실내용
- 3. 소송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한 불복 구제 절차의 진행여부
- 4.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그 대리인의 인적사항 및 신청인과의 관계
- 5. 대표자가 선정된 경우 그 대표자의 인적사항

③ 위원회는 고충민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고충민원 접수 처리부를 기록·관리한다.

④ 위원회는 고충민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접수를 보류하거나 거부할 수 없으며, 접수된 고충민원 서류를 부당하게 되돌려 보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위원회에서 고충민원 서류를 보류·거부 또는 반려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고충민원의 조사) ① 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접수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6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60일의 범위에서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고충민원의 내용이 거짓이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동일 민원을 제출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회에서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구 및 소속기관에 대한 설명 요구 또는 관련자료·서류 등의 제출 요구
2. 구 및 소속기관의 직원, 신청인, 이해관계인이나 참고인의 출석 및 의견 진술 등의 요구

3. 조사와 관계있다고 인정되는 장소·시설에 대한 현장조사

4. 전문가 자문 및 감정의 의뢰

④ 구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요구나 조사 등에 성실하게 응하고 협조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고충민원 조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고충민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고충민원의 이송 등) ① 위원회는 접수된 고충민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고충민원을 해당부서에 이송하거나 각하할 수 있다.

- 1. 행정심판, 행정소송, 감사원의 심사청구 및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불복 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 2. 법령에 따라 화해·알선·조정·중재 등 당사자 간의 이해조정을 목적으로 행하는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 3. 검찰 및 경찰 또는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수사·조사 중인 사항
- 4. 감사원이나 그 밖의 행정기관에서 감사가 진행 중인 사항
- 5. 사인 간의 권리관계 또는 사생활에 관한 사항
- 6. 구 소속 직원에 대한 인사행정상의 행위에 관한 사항
- 7. 구의회에 관한 사항
- 8. 그 밖에 위원회에서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고충민원을 이송 또는 각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권리의 구제에 필요한 절차와 조치를 안내할 수 있다.

제15조(운영지원) 구청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인력과 수당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고 충 민 원 신 청 서				처리기간 60일
*접수번호		제 호	*접수연월일	
신청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대리인	성명		연락처	
	주소		신청인과의 관계	
민원제목				
민원내용		‘고충민원 신청의 취지 및 이유, 원인이 된 사실내용’		
기타 참고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송 또는 다른 불복 구제 절차의 신청유무 : · 다른 기관에 고충민원을 신청한 경우 기관의 명칭 및 신청내용 : 		
		신 청 인	년	월 일 (서명 또는 날인)
부산광역시 수영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귀중				
※ 유의하실 사항 ① * 표시란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접수자 기재사항) ② 신청인이 5명 이상인 경우에는 뒷면의 연명부 원본을 제출하여 주십시오.				

210mm×297mm [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고충민원 접수 처리부

연번	접 수				처 리				비고	
	접수일	신청자	주 소 (연락처)	민원제목	접수자	조사관	처리일 (의결일)	통보일		처 리 내 용

297mm×210mm [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별지 제3호서식]

고충민원조사결과통지서

제 호
년 월 일

귀하

부산광역시 수영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년 월 일자로 귀하께서 신청하신 고충민원의 조사결과를 「부산광역시 수영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통지합니다.

고충민원 제목	
조사결과	
조치내용	

210mm×297mm [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 제안이유

위법·부당한 행정처분 등으로부터 구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고 열린 행정을 통해 행정기관과 구민 간 상호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부산광역시 수영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목적 및 정의 (제1조~제2조)
- 나.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3조~제4조)
- 다. 구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위원의 임기 등 (제5조~제9조)
- 라.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 (제10조~제14조)
- 마.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지원 등 (제15조~제16조)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수영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4년 5월 20일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강 성 태

부산광역시 수영구 조례 제1275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산광역시 수영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중소기업청장이 고시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 사업 운영지침」”을 “「부산광역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으로 한다.

제8조를 삭제한다.

제1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구 홈페이지”를 “부산광역시 수영구 (이하 “구”라 한다) 홈페이지”로 한다.

제19조제3항 중 “3주간 내에”를 “3주 이내에”로 한다.

제20조제2항 중 “3주간 내에”를 “3주 이내에”로 한다.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월말”을 “1월 말”로 한다.

제2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6조(시장관리자의 지정) ① 구청장은 법 제6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해당 시장 상인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법 제6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시장관리자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때 전통시장의 특성에 따라 해당 업무의 공공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8조제3항 중 “등기·등록 등”을 “등기·등록이나”로 한다.

제29조의2제1항 중 “갱신할 경우에 갱신 횟수는 1회에 한하여 할 수 있다”를 “갱신할 경우 한 차례만 갱신할 수 있다”로 한다.

제30조제1항 중 “입점상인”을 “상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2항의 위반으로 인하여”를 “제2항을 위반하여”로 한다.

제32조제2항 중 “이에 응하여야”를 “요구에 따라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시장활성화를 위하여 제2조 제4호에 따라 설치한 편의시설

3. 제6조제2항에 따라 산정된 점포가 점유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 연면적

제10조의2(시장의 인정 취소 절차) ① 구청장은 제10조에 따라 시장의 인정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당 시장 및 시장의 대표자에게 문서로 통보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1. ~ 4. (생략)

② (생략)

제19조(상인회 정관 등) ①·② (생략)

③ 제2항에 따라 정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일부터 3주간 내에 변경된 정관과 총회 회의록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상인회 등록 등) ① (생략)

제10조의2(시장의 인정 취소 절차) ① -----

부산광역시 수영구(이하 “구”라 한다) 홈페이지 -----
-----.

1. ~ 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19조(상인회 정관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3주 이내에

제20조(상인회 등록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등록된 사항 중 상인회 명칭, 대표자, 소재지, 업무구역, 주요재산이 변경된 때에는 그 변경을 결정한 총회일부터 3주간 내에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생략)

제25조(보고 및 자료제출) ① 상인회는 매년 1월말까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2. (생략)

② (생략)

제26조(시장관리자의 지정) ① 규칙 제14조에 따라 구청장은 법 제67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신청에 따라 지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시장관리자가 법 제67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해당 업무의 공공성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

----- 3주 이내에 -----

-----.

③ (현행과 같음)

제25조(보고 및 자료제출) ① -----
----- 1월 말 -----

-----.

1. 2.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26조(시장관리자의 지정) ① 구청장은 법 제6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해당 시장 상인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법 제6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시장관리자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때 전통시장의 특성에 따라 해당 업무의 공공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

제28조(시설물의 소유권) ①·②
(생략)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취득한 재산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등기·등록 등 그 밖에 권리보전에 필요한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공유재산 관리대장 등 관련되는 부속 증빙서류를 비치하고 시설물의 관리 및 변동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④·⑤ (생략)

제29조의2(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의 갱신 횟수 등) ①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계약을 갱신할 경우에 갱신 횟수는 1회에 한하여 할 수 있다.

② ~ ③ (생략)

제30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시설물을 입점상인과 시장·상권활성화구역 및 상점가 이용고객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운영하여야

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8조(시설물의 소유권)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등기·등록이나

-----.

④·⑤ (현행과 같음)

제29조의2(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의 갱신 횟수 등) ① -----

--갱신할 경우 한 차례만 갱신할 수 있다.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30조(수탁자의 의무) ① -----
----- 상인-----

<p>한다.</p> <p>②·③ (생략)</p> <p>④ 수탁자는 <u>제2항의 위반으로 인하여</u> 구청장의 시정명령 또는 원상회복 등의 처분이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p> <p>제32조(지도·감독) ① (생략)</p> <p>② 구청장은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현황에 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 또는 수시로 관련 서류를 검사할 수 있으며, 시설물의 관리자(수탁자를 포함한다)는 <u>이에 응하여야</u> 한다.</p> <p>③ (생략)</p>	<p>---.</p> <p>②·③ (현행과 같음)</p> <p>④ ----- <u>제2항을 위반하여</u> ----- ----- -----.</p> <p>제32조(지도·감독)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 -----</p> <p><u>요구에 따라야</u> --.</p> <p>③ (현행과 같음)</p>
---	---

◆ 제안이유

전통시장의 면적에서 제외되는 시설과 부지만 규정, 나머지를 모두 허용하도록 하며, 시장관리자 지정 시 시장 상인의 동의를 얻도록 절차를 추가하여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전통시장의 면적에 포함되는 시설과 부지에 관한 조문 삭제 (제8조)
- 나. 시장관리자의 지정 절차 추가 (제26조)
- 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 (제4조, 제10조의2, 제19조, 제20조, 제25조, 제28조, 제29조의2, 제30조, 제32조)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수영구 향토문화유산 보호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4년 5월 20일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강 성 태

부산광역시 수영구 조례 제1276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향토문화유산 보호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산광역시 수영구 향토문화유산 보호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부산광역시 수영구 향토문화유산 보호 및 관리 조례”를 “부산광역시 수영구 향토유산 보호 및 관리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향토문화유산”을 “향토유산”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향토문화유산””을 ““향토유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문화유산으로서 「문화재보호법」”을 “국가유산으로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부산광역시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및 「부산광역시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로, “문화유산”을 “국가유산”으로 한다.

제3조의 제목 “(향토문화유산의 기본 원칙)”을 “(향토유산의 기본 원칙)”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향토문화유산”을 “향토유산”으로 한다.

제2장의 제목 “향토문화유산 위원회”를 “향토유산위원회”로 한다.

제4조 중 “향토 문화유산 위원회”를 “향토유산위원회”로 한다.

제5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향토문화유산”을 각각 “향토유산”으로

한다.

제6조제3항제2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

제3장의 제목 “향토문화유산의 보호”를 “향토유산의 보호”로 한다.

제15조의 제목 “(향토문화유산의 지정 및 해제)”를 “(향토유산의 지정 및 해제)”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문화유산을 향토문화유산”을 “향토유산”으로, “지정 신청서”를 “향토유산 지정신청서”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중 “향토문화유산”을 각각 “향토유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단서 중 “지정문화재로”를 “지정유산으로”로, “향토문화유산”을 “향토유산”으로 한다.

제16조 중 “향토문화유산”을 각각 “향토유산”으로 한다.

제17조 중 “유·무형의 문화유산”을 “유·무형의 국가유산”으로, “향토문화유산”을 “향토유산”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향토문화유산”을 각각 “향토유산”으로 한다.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조(지정서 교부) 지정된 향토유산은 별지 제2호서식의 향토유산 지정서를 교부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향토유산 지정서 발급대장에 기재하여 비치해야 한다.

제20조 중 “향토문화유산”을 각각 “향토유산”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중 “향토문화유산”을 각각 “향토유산”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및 제2항 중 “향토문화유산”을 각각 “향토유산”으로 한다.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제2호 및 제3호 중 “향토 문화유산”을 각각 “향토유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향토문화유산”을 “향토유산”으로 하며, 같은 항 중 “문화재”를 “향토유산”으로 한다.

제24조의 제목 “(향토문화유산 안내표지판 등의 설치)”를 “(향토유산 안내 표지판 등의 설치)”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향토문화유산”을 “향토유산”으로 한다.

제4장의 제목 “향토문화유산의 보존 및 지원”을 “향토유산의 보존 및 지원”으로 한다.

제25조제1항 중 “향토문화유산”를 “향토유산”로, “향토문화유산 관리”를 “향토유산 관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향토 문화유산”을 “향토유산”으로 한다.

제26조제1항 중 “향토문화유산”을 “향토유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

제27조 중 “향토문화유산”을 각각 “향토유산”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처분·절차 및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 수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4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

② 부산광역시 수영구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7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

③ 부산광역시 수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 제목 “(문화재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부산광역시지정유산에 대한 재산세 감면)”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부산광역시 문화재 보호 조례」”를 “「부산광역시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로, “문화재로”를 “부산광역시지정유산으로”로 한다.

④ 부산광역시 수영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4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

⑤ 부산광역시 수영구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향토유산 지정신청서

향 토 유 산 명 칭			수 량	
소 재 지				
소 유 자 또 는 관 리 자	성 명		연 락 처	
향 토 유 산 연 혁	※ 내용이 모자랄 경우 별첨자료 첨부 및 기재			
향 토 유 산 현 황	※ 구체적인 사진자료 첨부			
그 밖 의 지 정 에 필 요 한 사 항	※ 향토유산 위치도, 도면 등 무형유산인 경우 내용과 특징			

위와 같이 향토유산으로 지정신청합니다.

신청자 주소 :

성명 :

인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앞면)

향토유산 지정서

- 명 칭 :
- 구 분 :
- 소 재 지 :
- 수 량 :

위를 향토유산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뒷면)

소유자	주소	소재지	교부연월일	기록인
(변경사항)				
소유자	주소	소재지	교부연월일	기록인
<p>다음의 경우 이 지정서를 첨부 신고하여야 합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향토유산의 소유자(기능 보유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2. 향토유산의 소유자(기능 보유자)의 주소가 변경되었을 경우 3. 향토유산의 소재지가 변경되었을 경우 				

[별지 제3호서식]

향토유산 지정서 발급대장

발급 번호	발급 월 일	향토 유산명	지정 번호	지정 년 월 일	향토유산 지정내역	소재지 또는 보관장소

소유자		보구 호역	관리자	
주소	생년월일 성명		주소	성명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p><u>부산광역시 수영구 향토문화유산 보호 및 관리 조례</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향토문화 유산</u>을 보존·관리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u>향토문화유산</u>”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p> <p>1. 부산광역시 수영구(이하 “구”라 한다)내에 있는 <u>문화유산</u>으로서 「<u>문화재보호법</u>」에 따라 지정되지 않은 <u>문화유산</u> 중 역사적·예술적·학술적·경관적 가치가 있는 유·무형의 것 또는 이에 준하는 고고자료</p>	<p><u>부산광역시 수영구 향토유산 보호 및 관리 조례</u></p> <p>제1조(목적) ----- <u>향토유산</u>-----</p> <p>-----</p> <p>-----</p> <p>-----</p> <p>-----.</p> <p>제2조(정의) -----</p> <p>--- “<u>향토유산</u>”-----</p> <p>-----.</p> <p>1. -----</p> <p>----- <u>국가유산</u>으로서 「<u>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u>」, 「<u>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u>」, 「<u>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u>」, 「<u>부산광역시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u>」 및 「<u>부산광역시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u>」-----</p> <p><u>국가유산</u> -----</p>

<p>2. (생략)</p> <p>제3조(향토문화유산의 기본 원칙) <u>향토문화유산</u>의 보존·관리 및 활용은 원형유지를 기본원칙으로 한다.</p> <p>제2장 <u>향토문화유산 위원회</u></p> <p>제4조(설치)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수영구 <u>향토 문화유산 위원회</u>(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p>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결정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향토문화유산</u>(보호구역을 포함한다)의 지정과 해제에 관한 사항 2. <u>향토문화유산</u>의 보존·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u>향토문화유산</u>의 보존·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하여 구청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p>제6조(구성) ①·② (생략)</p> <p>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p>	<p>--</p> <p>2. (현행과 같음)</p> <p>제3조(향토유산의 기본 원칙) <u>향토유산</u>-----</p> <p>-----</p> <p>-----.</p> <p>제2장 <u>향토유산위원회</u></p> <p>제4조(설치) -----</p> <p>-----</p> <p>-- <u>향토유산위원회</u>-----</p> <p>-----.</p> <p>제5조(기능) -----</p> <p>-----.</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향토유산</u>----- 2. <u>향토유산</u>----- 3. ----- <u>향토유산</u>----- <p>-----</p> <p>제6조(구성)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p> <p>-----</p> <p>-----.</p>
---	--

- 1. (생략)
- 2. 문화재의 보존 및 활용과 관련된 분야의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
- 3.·4. (생략)
- ④ (생략)

제3장 향토문화유산의 보호

제15조(향토문화유산의 지정 및

해제) ① 제2조에 따른 문화유산을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정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된 향토문화유산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이를 지정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향토문화유산이 그 가치를 상실하였거나 지정을 해제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할 때 위원회의 심의 후 이를 해제할 수 있다. 다만, 향토문화유산이 국가 및 부산광역시 지정문화재로 지정된 때에는 지정된 날에 향토문화유산에서 해제된 것으로 본

- 1. (현행과 같음)
- 2. 국가유산-----
-
-
- 3.·4. (현행과 같음)
- ④ (현행과 같음)

제3장 향토유산의 보호

제15조(향토유산의 지정 및 해제)

① ----- 향토유산-----

----- 향토유산
지정신청서-----
--.

② ----- 향토유산-----
-----.

③ -----
-- 향토유산-----

--. --- 향토유산-----
----- 지정유산으로 ---
----- 향토유산-----

다.

제16조(지정명칭)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된 향토문화유산은 유·무형을 나누지 않고 향토문화유산이라 한다.

제17조(지정기준) 역사적·예술적·학술적 또는 경관적으로 가치가 있는 유·무형의 문화유산, 지역문화를 연구하는데 필요한 유적 및 자료에 대하여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관리할 수 있다.

제18조(보호구역의 지정) ① 구청장은 향토문화유산의 보호·관리상 필요한 지역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보호구역내에서 다음 행위를 하고자 하는 신청이 있을 때에는 향토문화유산 보호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1. 2. (생략)

제19조(지정서 교부) 지정된 향토문화유산은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서를 교부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발급대장에 기재하여 비치해야 한다.

--.

제16조(지정명칭) -----
----- 향토유산-----
----- 향토유산-----.

제17조(지정기준) -----

----- 유·무형의 국가유산-----
----- 향토유산-----
-----.

제18조(보호구역의 지정) ① -----
----- 향토유산-----
-----.

② -----

----- 향토유산 -----
-----.

1. 2. (현행과 같음)

제19조(지정서 교부) 지정된 향토유산은 별지 제2호서식의 향토유산 지정서를 교부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향토유산 지정서 발급대장에 기재하여 비치해야

체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관리 단체를 지정할 경우 그 향토문화유산의 소유자나 관리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23조(관리자 등의 의무) ① 구청장은 향토문화유산을 보존·관리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1. 향토문화유산의 원형이 변형되지 않도록 보존·관리
- 2. 향토문화유산 내 토지는 소유자가 매수요구 및 매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구청장이 이를 매입하여 보존
- 3. 향토문화유산의 주변건축 및 토지이용에 대한 개발계획 수립 시 향토문화유산 보존 검토

② 향토문화유산의 소유자와 관리자는 문화재의 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구의 시책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제24조(향토문화유산 안내표지판 등의 설치) 구청장은 지역문화

-----.

② -----
----- 향토유
산-----
-----.

제23조(관리자 등의 의무) ① ---
---- 향토유산-----

-----.

- 1. 향토유산-----
- 2. 향토유산 -----
- 3. 향토유산-----
----- 향토유산 -----

② 향토유산-----
---- 향토유산-----
-----.

제24조(향토유산 안내표지판 등의 설치) -----

의 보급과 선양을 위하여 향토 문화유산 안내표지판 등을 설치할 수 있다.

제4장 향토문화유산의 보존 및 지원

제25조(정기조사) ① 구청장은 향토문화유산의 현상, 관리 그 밖의 환경보전상황 등에 관하여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향토문화유산 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기 조사는 연 2회 이상 실시하며 그 조사 결과를 향토 문화유산 정기조사서 등에 기록해야 한다.

제26조(기록보존) ① 구청장은 향토문화유산의 관리등에 관한 기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문화재 전문지식이 있는 자로 하여금 기록 작성을 의뢰하여 작성하게 할 수 있다.

제27조(지원등) 향토문화유산의 보존상 필요한 경비는 그 해당되는 소유자나 관리자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향토문화유산의 관리, 보호, 수리를 위하여 구청

----- 향토 유산 -----
-----.

제4장 향토유산의 보존 및 지원

제25조(정기조사) ① ----- 향토유산-----

----- 향토유산 관리-----
--.

② -----

----- 향토유산 -----
-----.

제26조(기록보존) ① ----- 향토유산-----
-----.

② ----- 국가유산 -----
-----.

제27조(지원등) 향토유산-----

----- 향토유산-----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
-----------------------------------	-----------------

◆ 제안이유

문화재청의 「국가유산기본법」 제정^{2023. 5. 16.공포, 2024. 5. 17.시행} 및 ‘국가유산 체제 전환’ 정책 추진에 따라, 일본 문화재보호법^{1950년 제정}을 원용한 현 문화재 분류체계를 유네스코 국제기준에 부합시키기 위하여 중앙부처 법령을 포함, 시도 및 구·군의 문화재 관련 조례들도 일제히 개선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우리 구 조례상의 문화재 관련 각종 용어 및 기존의 분류체계를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조례 제명 변경
- 나. 문화재 관련 용어 변경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1	향토문화유산	향토유산	제1조, 제2조, 제3조, 제5조, 제8장,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제4장, 제5조, 제6조, 제7조
2	문화유산	국가유산	제2조, 제17조
3	「문화재보호법」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
4	향토문화유산 위원회	향토유산위원회	제2장, 제4조
5	문화재	국가유산	제6조, 제26조
6	지정문화재	지정유산	제15조

다. 유관부서 조례 개정 (부칙)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수영구 해양레포츠 기반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4년 5월 20일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강 성 태

부산광역시 수영구 조례 제1277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해양레포츠 기반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산광역시 수영구 해양레포츠 기반시설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부산광역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 가정

제10조 중 “망실”을 “분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안이유

부산광역시의 다자녀가정 지원 확대(3→2자녀) 사항을 우리 구 조례에도 반영하여 다자녀가정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이용료 감면 대상 중 다자녀가정 규정 정비 (제5조의2제1항제4호)
- 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 (제10조)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수영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4년 5월 20일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강 성 태

부산광역시 수영구 조례 제1278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산광역시 수영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제1항 본문에 따른 폐기물 배출 시 과도하게 압축하여 배출해서는 안 되며, 종량제봉투 50L는 13kg 이하, 75L는 19kg 이하로 배출하여야 한다.

제19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구청장은 제1항제1호에 따른 수급자가 관내 전입신고 시 세대 기준 연 1회 최대 5만원의 범위에서 대형폐기물 처리 수수료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부산광역시 수영구 대형폐기물 처리 대행업체를 통해 처리한 경우로 한정한다.

제2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수거보상제) ① 구청장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담배꽂초 등을 수거하여 보상금을 신청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거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수거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
<p>제8조(폐기물의 배출방법) ①·② (생략) <u><신설></u></p>	<p>제8조(폐기물의 배출방법)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 본문에 따른 폐기물 배출 시 과도하게 압축하여 배출해서는 안 되며, 종량제봉투 50L는 13kg 이하, 75L는 19kg 이하로 배출하여야 한다.</p>
<p>제19조(수수료의 감면 등) ①·② (생략) <u><신설></u></p>	<p>제19조(수수료의 감면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구청장은 제1항제1호에 따른 수급자가 관내 전입신고 시 세대 기준 연 1회 최대 5만원의 범위에서 대형폐기물 처리 수수료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부산광역시 수영구 대형폐기물 처리 대행업체를 통해 처리한 경우로 한정한다.</p>
<p><u><신설></u></p>	<p>제24조(수거보상제) ① 구청장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담배꽂초 등을 수거하여 보상금을 신청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거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거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p>

◆ 제안이유

- 가. 환경부의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2022. 1.10. 시행}에 따른 종량제 봉투 배출 시 무게 상한 규정을 신설하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근로자의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하고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 나. 취약계층 재정 부담 완화 및 대형폐기물 무단투기 예방을 위해 추진하는 시책인 ‘관내 이사 저소득층 대형폐기물 처리비용 지원’ 사업과
- 다.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담배꽂초 등을 수거 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수거보상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종량제봉투 배출 시 무게 상한 규정 신설 (제8조제3항)
- 나. 관내 이사 저소득층 대형폐기물 처리 수수료 지원 규정 신설 (제19조제3항)
- 다. 수거보상제 규정 신설 (제24조)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수영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4년 5월 20일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강 성 태

부산광역시 수영구 조례 제1279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산광역시 수영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촉진을 위하여 공동주택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 설치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⑤ 구청장은 신축되는 공동주택에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를 설치
하도록 공동주택 사업시행자 등에게 권장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안이유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을 위한 시책 추진에 필요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공동주택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 보급사업 추진의 지원 근거 신설
(제7조제4항)

나. 신축 공동주택 대상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 설치 권장을 위한 근거 신설
(제7조제5항)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수영구 어린이 안전보험 운영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4년 5월 20일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강 성 태

부산광역시 수영구 조례 제1280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어린이 안전보험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수영구 어린이의 생활 안정을 위한 어린이 안전보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린이”란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어린이 안전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이란 사고 또는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부산광역시 수영구(이하 “구”라 한다) 어린이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구와 보험기관이 계약을 체결한 보험을 말하며, 계약내용은 보험증권과 보험약관으로 정한다.
3. “보험기관”이란 보험 지원과 관련하여 구와 계약을 체결한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및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 따른 한국지방재정공제회를 말한다.

제3조(가입대상) 보험의 가입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어린이
2.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구의 국내거소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어린이

3. 「출입국관리법」 제34조에 따라 구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어린이

제4조(보장내용과 보장한도액)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은 보험 계약 시
예산의 범위에서 사고 유형별 보장내용과 보장한도액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조(보험금 신청) 보험증권과 보험약관에 규정된 범위에서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의 법정대리인은 청구서 및 구비서류를 갖추어 보험
기관에 보험금을 신청할 수 있다.

제6조(보험금 지급) 보험기관은 제5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대리인에게 보험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제7조(보험금 지급 제외 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2.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보험가입을 제한하는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안이유

어린이 안전사고 발생에 대비한 어린이 안전보험 운영으로 어린이 보호체계 강화 및 사고로 인한 심리적·경제적 부담 완화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 (제1조~제2조)

나. 가입대상, 보장내용과 보장한도액에 관한 사항 (제3조~제4조)

다. 보험금 신청 및 보험금 지급에 관한 사항 (제5조~제6조)

라. 보험금 지급 제외에 관한 사항 (제7조)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4년 5월 20일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강 성 태

부산광역시 수영구 조례 제1281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8호서식 뒤쪽 중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란의 “(가족관계증명서·인감증명서)”를 “(가족관계증명서 1부,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 중 1부)”로 한다.

별지 제9호서식의 첨부서류란 제2호 중 “인감증명서 1부”를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 중 1부”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안이유

‘인감증명서’ 제출 의무화 규정을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의 제출도 가능하도록 병기하여, 국민의 생활편의를 증진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구비서류 정비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4년 5월 20일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강 성 태

부산광역시 수영구 조례 제1282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역보건법」 제34조제2항”을 “「지역보건법」 제34조제3항”으로 한다.

제2조 중 “「지역보건법」 제34조제1항”을 “「지역보건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조례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

[별표]

과태료 부과기준(제2조 관련)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각 위반행위에 따라 각각 부과한다.
-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과 그 처분 후에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2. 개별기준

(단위 : 만원)

위 반 사 항	근거법령	부 과 금 액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이상 위반
가. 「지역보건법」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	「지역보건법」 제34조제1항	600	1,200	2,400
나. 「지역보건법」 제2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건강검진등을 한 자	「지역보건법」 제34조제2항제1호	30	50	100
다. 「지역보건법」 제29조를 위반하여 동일 명칭을 사용한 자	「지역보건법」 제34조제2항제2호	50	100	150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 건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과 태료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 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지역보 건법」 제34조제3항----- ----- -----.</p>
<p>제2조(과태료 부과기준) 「지역보 건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과 태료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p>	<p>제2조(과태료 부과기준) 「지역보 건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 -----.</p>

◆ 제안이유

상위법인 「지역보건법」의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신설된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인용 조문 정비 (제1조~제2조)

나.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및 근거법령 정비 (별표)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수영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4년 5월 20일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강 성 태

부산광역시 수영구 조례 제1283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산광역시 수영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본문 중 “19세 이상 34세 이하”를 “18세 이상 39세 이하(고용 및 생활 안정 지원과 관련된 경우에는 15세 이상 18세 미만도 포함)”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4. “취약계층 청년”이란 고용·교육·사회·경제 등의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말한다.

제3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구청장은 청년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경우 취약계층 청년에 대해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청년”이란 부산광역시 수영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u>19세 이상 34세 이하인</u>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p> <p>2.·3. (생략)</p> <p><u><신 설></u></p>	<p>제2조(정의) ----- -----.</p> <p>1. ----- ----- ----- <u>18세 이상 39세 이하(고용 및 생활 안정 지원과 관련된 경우에는 15세 이상 18세 미만도 포함)</u>-----.</p> <p>2.·3. (현행과 같음)</p> <p>4. <u>“취약계층 청년”이란 고용·교육·사회·경제 등의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말한다.</u></p>
<p>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② (생략)</p> <p><u><신 설></u></p>	<p>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② (현행과 같음)</p> <p><u>③ 구청장은 청년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경우 취약계층 청년에 대해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u></p>

◆ 제안이유

저출산, 고령화 및 침체된 고용시장 등의 영향으로 청년층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짐에 따라, 우리 구 청년정책의 대상 연령을 확대하고 취약계층 청년에 대한 우선 지원 규정을 신설하여 다양한 계층의 보다 많은 청년들이 정책적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현행 청년 연령의 변경 (제2조제1호)
- 나. 취약계층 청년에 대한 우선적 지원 규정 신설 (제3조제3항)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4년 5월 20일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강 성 태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조례 제1284호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의사업무담당주사가”를 “의정계장이”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제6조 (관리) 공인은 <u>의사업무담당주사가</u> 이를 관리한다.	제6조 (관리) ----- <u>의정계장이</u> -----.

◆ 제안이유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의회사무과 내 계 신설 및 해당사무의 명확한 분장으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의사업무담당주사”를 “의정계장”으로 변경 (제6조)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4년 5월 20일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강 성 태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조례 제1285호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본문 중 “의정자료 수집·연구비 900,000원과 보조활동비 200,000원”을 “의정자료 수집·연구비 1,200,000원과 보조활동비 300,000원”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의정활동비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 제안이유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비 지급 범위를 인상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2023.12.14.)에 따라, 수영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 금액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의정활동비 증액 (제2조)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4년 5월 20일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강 성 태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조례 제1286호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사업무 담당 주사를”을 “의정계장을”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p>제10조(간사)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u>의사업무 담당 주사를</u> 간사로 두며,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p> <p>1. ~ 4. (생략)</p>	<p>제10조(간사) ----- ----- <u>의정계</u> <u>장을</u>----- -----.</p> <p>1. ~ 4. (현행과 같음)</p>

◆ 제안이유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의회사무과 내 계 신설 및 해당사무의 명확한 분장으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의사업무 담당 주사”를 “의정계장”으로 변경 (제10조)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4년 5월 20일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강 성 태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조례 제1287호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6항 중 “의사업무담당주사가”를 “의정계장이”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p>제11조(공적심사위원회) ① ~ ⑤ (생 략)</p> <p>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u>의사업무담당주사가</u> 된다.</p> <p>⑦ (생 략)</p>	<p>제11조(공적심사위원회) ① ~ ⑤ (현행과 같음)</p> <p>⑥ ----- ----- ----- <u>의정계장이</u>----- -----.</p> <p>⑦ (현행과 같음)</p>

◆ 제안이유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의회사무과 내 계 신설 및 해당사무의 명확한 분장으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의사업무담당주사”를 “의정계장”으로 변경 (제11조제6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법제업무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24년 5월 20일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강 성 태

부산광역시 수영구 규칙 제677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법제업무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

부산광역시 수영구 법제업무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입법예고를 단축하거나 생략하는 경우”를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입법예고를 생략하거나 예고기간을 단축하려고 하는 경우”로 한다.
제17조제2항 단서 중 “제15조제4항”을 “제14조제4항”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p>제7조(입법예고) ①·② (생략)</p> <p>③ <u>주관과장은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입법예고를 단축하거나 생략하는 경우에는 입법계획 수립 시 기획전략과장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u></p> <p>제17조(간사 등) ① (생략)</p> <p>② 서기는 심의회가 끝난 후 별지 제9호서식 회의록을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u>제15조제4항에 따라 서면으로 심의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 심의의결서를 첨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u></p>	<p>제7조(입법예고)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 「<u>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u>」 제4조제2항에 따라 입법예고를 생략하거나 <u>예고기간을 단축하려고 하는 경우-----</u> -----.</p> <p>제17조(간사 등)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 ---- <u>제14조제4항</u>----- ----- ----- -----.</p>

◆ 제안이유

인용하고 있는 제명 및 조문을 현행에 맞게 정비하여 효율적인 법제업무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인용 제명 등 변경 (제7조)

나. 인용 조문 변경 (제17조)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무인계인수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24년 5월 20일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강 성 태

부산광역시 수영구 규칙 제678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무인계인수 규칙 일부개정규칙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무인계인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을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p>제4조(공무원의 사무인계) ① (생략)</p> <p>② 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인계 할 때에는 「<u>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u>」 별지 제12호서식의 내용을 포함하여 전자적 방법으로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해야 한다.</p>	<p>제4조(공무원의 사무인계)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u>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u>」 ----- ----- ----- ----- -----</p>

◆ 제안이유

상위법령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의 일부 개정^{2023. 6. 28. 공포시행}에 따른 제명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인용 제명 정비 (제4조제2항)